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월 23일 / 김영헌, 김은주, 김종익, 김철수. 김하영, 박희정, 전주형, 정원석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년 1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5. 2. 12.) 상정 . 질의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영헌 의원)

가. 제정사유

○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해 자원 낭비 예방과 비대면 소비 일상화 등으로 증가된 1회용품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포항 시민의 문화적, 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다회용기 모범적 사용하는 기관 등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다. 관련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경희)

- 본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해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종합검토 결과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788호, 시행 2021. 7. 26.] 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회의 및 행사 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여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한 바 있으며,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 및 1회용품 상용화 등으로 1회용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포항시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다회 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재정적 지원사업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는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조례안은 지역의 행사나 축제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1회용품 사용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제정으로 축제 등 지역행사 개최 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행사 추진주체 및 참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안 제4조 각 호의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임.

- 다회용기 사용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상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이나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5. 토론의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포항시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가. 수정 사유

❍ “행사·축제”에 대한 정의에 체육행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다회용기 관련 산업에 대한 정의도 조례에 포함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수정주요골자

❍ 안 제2조제3호에 “행사·축제”의 정의 중 체육 행사를 포함하고,

❍ 안 제2조제7호에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안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회용 관련 산업을 명확히 하고자 함.

포항시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사·축제”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회용기 관련 산업”이란 다회용기를 회수,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및 디자인 개발, 생산 등의 산업 등을 말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행사·축제”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관광 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3. ---------- 지역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다회용기 관련 산업”이란 다회용기를 회수,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및 디자인 개발, 생산 등의 산업 등을 말한다.